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4. 17

제 안 자 : 이기동의원

1. 수정이유

- 수강료·사용료 감면대상 중 “여성단체”의 개념 및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, 또한 감면대상의 선별 기준에 허가권자의 재량성 및 임의성이 부여되어
- 향후 여성(계모임, 부녀회, 동창회, 동문회 등) 및 단체 등이 시설 사용을 신청할 경우 그 대상·목적 등 그 선별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,
-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교자 함.

2. 주요글자

- 안 제4조(제1항 제2호) 중
 - “여성단체”를 “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는 여성단체”로 한다.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4조(제1항 제2호) 중

- “여성단체”를 “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는 여성단체”로 한다.